



## 유럽문화수도(Kulturhauptstadt Europas) -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sup>1)</sup>를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팀

### I. 결정의 등장배경

유럽내 각 국의 도시들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1년 동안 고유하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유럽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및 공통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유럽문화수도는 1999년까지는 유럽문화도시(Kulturstadt Europas)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유럽문화수도(Kulturhauptstadt Europa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다.

본 행사는 1985년 6월 13일 그리스 델피(Delphi)에서 개최된 유럽연합이사회(der Rat der Europäischen Union)의 문화장관회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이

었던 Melina Mercouri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이 제안이 문화장관회의에서 받아들여져서 1985년 첫 유럽문화도시로 그리스의 아테네가 선정되었다. 이 행사는 그 당시 지정된 도시, 지역 더 나아가 당해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개방하며, 유럽 공동체 국가 상호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유럽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유럽문화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 독일이 유럽이사회(Europäische Rat)<sup>2)</sup> 의장국이었던 1999년에 유럽의회(Europäisches Parlament)와 이사회(Rat)의 2005년에서 2019년까지의 유럽문화수도 행사 촉진을 위한 유럽공동체행위에 관한 결정 1419/1999/EG<sup>3)</sup>을 통해서 본 행사는 그 의미가 강화되었다. 그 결정에 따라 이사회(Rat)는 유럽



1) Beschluss Nr. 1622/2006/EG, Amtsblatt der EG, L 304 vom 3.11.2006 참조.

2) 일반적으로 "이사회"라고 번역되는 Rat der Europäischen Union(통상 Rat라고 칭함)과 "유럽이사회"라고 번역되는 Europäischer Rat는 서로 다른 기구이다.



의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한 집행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의 추천을 받아 매년 유럽 문화수도를 선정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행사는 언론의 반응 및 해당 도시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선정절차는 많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유럽공동체 결정 Nr. 1419/1999/EG는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적 차원에서 이 행사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과 2009년의 유럽문화수도에는 기존의 유럽공동체 결정 Nr.1419/1999/EG이 계속 적용된다.<sup>4)</sup>

## II. 선정대상국가와 선정도시

### 1. 기존의 선정대상국가 및 선정도시(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 이전)

유럽문화도시는 순환의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EU회원국이 확정된 순서에 의거해 자신의 국가 내 한 도시를 유럽문화도시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기존의 유럽문화도시는 아래 표와 같다. 2000년에는 특별히 9개의 문화도시가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유럽연합에서 기획된 특별이벤트로써 유럽문화도시를 유럽전역에 걸쳐 선정함으로써 동서남북을 잇는 유럽 전역의 문화도시벨트를 구성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유럽문화의 부흥을 기리는 이벤트로 기획되었다. 이 이벤트를 위해서 유럽문화도시연합(AECC)<sup>5)</sup>이라는 한시적인 단체를 조직해서, 당시 유럽문화도시로 지정된 9개 도시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협력 조정을 담당했었다.

해당년도	유럽문화도시선정대상국가	선정된 유럽문화도시
1985	그리스	아테네
1986	이탈리아	피렌체
198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88	독일	베를린
1989	프랑스	파리
1990	영국	글래스고우
1991	아일랜드	더블린
1992	스페인	마드리드
1993	벨기에	안트워프
1994	포르투갈	리스본
199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96	덴마크	코펜하겐



3) 본 결정의 정식명칭은 2005년에서 2019년까지의 “유럽문화수도” 행사의 촉진을 위한 유럽공동체행동의 설정을 위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BESCHLUSS 1419/1999/EG DES EUROP. 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Mai 1999 über die Einrichtung einer Gemeinschaftsaktion zur Förderung der Veranstaltung “Kulturhauptstadt Europas” für die Jahre 2005 bis 2019)이다. Amtsblatt der EG, L 166/1 vom 1.7.1999 참조.

4)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3조 참조.

5) Association of European Cultural Cities.

1997	그리스	데살로니카
1998	스웨덴	스톡홀름
1999	독일	바이마르
2000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스페인	아비뇽 베르겐 볼로냐 브뤼셀 헬싱키 크라코우 프라하 레이카비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2001	아일랜드	더블린
2002	스페인	마드리드
2003	벨기에	안트워프
2004	포르투갈	리스본

## 2. 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 와 유럽공동체 결정 649/2005/EG 및 1622/2006/EG에 따른 선정대상국가 및 선정도시

한편 유럽의회(Europäisches Parlament)와 이사회(Rat)의 2005년에서 2019년까지의 유럽문화수도행사 촉진을 위한 유럽공동체행위에 관한 결정 1419/1999/EG에는 그 부록에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에 관한 목록을 순환의 원칙에 따라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며 선정대상국가를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15개 EU회원국에 더하여 2004년에 새로이 10개의 회원국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기존의 목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새로이 EU에 가입한 10개의 회원국<sup>6)</sup>을 위해 유럽공동체 결정 649/2005/EG<sup>7)</sup>을 공포하여 기존의 선정 대상국가에 새로이 가입한 회원국을 매년 한 개씩 추가하여 한해에 2개의 유럽문화수도가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부터는 다시 매년 한 개의 유럽문화수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2개의 EU회원국이 또다시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결정을 다시 변경하여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에 의해 2007년에 루마니아, 2019년에 불가리아를 추가하여 본 결정의 부록에 최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 III. 유럽공동체 결정 Beschluss Nr. 1622/2006/EG<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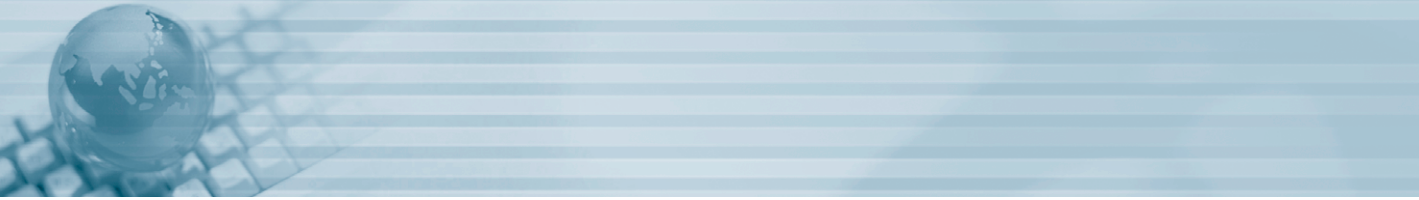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문화수도와 관련하여 여러 번의 유럽공동체결정의 개정이 있어 왔다. 현재는 유럽공동체 결정 Beschluss<sup>9)</sup> Nr.



6) 그러나 2008년 현재, 2개의 회원국이 더 가입하여 총 27개 회원국이 EU에 가입된 상태이다.

7) BESCHLUSS Nr. 649/2005/E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April 2005 zur Änderung des Beschlusses Nr. 1419/1999/EG über die Einrichtung einer Gemeinschaftsaktion zur Förderung der Veranstaltung "Kulturhauptstadt Europas" für die Jahre 2005 bis 2019, Amtsblatt der EG, L 117/20 vom 4.5.2005 참조.

8) BESCHLUSS Nr. 1622/200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2006 über die Einrichtung einer Gemeinschaftsaktion zur Förderung der Veranstaltung "Kulturhauptstadt Europas" für die Jahre 2007 bis 2019. Amtsblatt der EG, L 304 vom 3.11.2006 참조.



해당년도	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		유럽공동체 결정 649/2005/EG와 1622/2006/EG	
	유럽문화도시 선정대상국가	선정된 유럽문화도시	새로이 추가된 유럽문화도시 선정대상국가	선정된 유럽문화도시
2005	아일랜드	코크(Cork)	대상없음	
2006	그리스	파트라스	대상없음	
200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시비우
2008	영국	리버풀	대상없음	
2009	오스트리아	린쯔	리투아니아	빌누스
2010	독일	에센	헝가리 터키(EU 이외국가 대표)	페(Pécs) 이스탄불
2011	핀란드	터쿠(Turku)	에스토니아	탈리닌
2012	포르투갈	기마레슈(Guimarães)	슬로베니아	마리보
2013	프랑스	미정	슬로바키아	미정
2014	스웨덴	미정	라트비아	미정
2015	벨기에	미정	체코	미정
2016	스페인	미정	폴란드	미정
2017	덴마크	미정	사이프러스	미정
2018	네덜란드	미정	말타	미정
2019	이탈리아	미정	불가리아	미정

1622/2006/EG가 유럽문화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최종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결정은 유럽문화수도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절차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에 적용되던 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에 따른 선정절차는, ① 도시들 간의 경쟁, ② 선정위원회의 역할, ③ 심사의 문제, ④ 유럽적 차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위원회(Komission)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받아온 바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유럽공동체 결정 Beschluss Nr. 1622/2006/EG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9) 보통 “결정”이라고 번역되는 Beschluss는 유럽연합설립조약(EUV)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한 법률행위로서 유럽연합의 공동의 대외정책 및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전략, 일반원칙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 1. 목적

본 결정은 기존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① 선정절차에 참여한 도시들 간의 국가내의 경쟁강화,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과제의 변경, ③ 도시선정과 행사 시작 사이의 중간 심사절차의 도입, ④ 선정경쟁도시에 의해 제안된 프로그램의 유럽적 차원의 문제에 중점을 두기 등.

본 결정은 기존의 유럽공동체 결정 1419/1999/EG의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을 대체한다. 동시에 기존의 행사를 “유럽문화수도”로 개칭한다.

## 2. 시효의 개시와 경과규정

새로운 유럽문화수도 명명절차는 6년 이상이 걸리고, 본 결정에 따른 새로운 선정절차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본 결정에 따른 절차는 2013년에 유럽문화수도로 명명될 도시에 처음 적용된다. 기존의 유럽공동체 결정 Nr. 1419/1999/EG는 본 결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과 2009년의 유럽문화수도에는 기존의 유럽공동체 결정 Nr. 1419/1999/EG이 계속 적용된다.<sup>10)</sup>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유럽문화수도에는 별도로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의 제14조에 경과규정을 두고, 별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sup>11)</sup>

##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범위와 기준

모든 후보도시의 지원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EGV) 제151조<sup>12)</sup>에 따른 목표(문화적 공동협력)에 부응하는 유럽적 차원의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아래 두 가지 카테고리의 일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sup>13)</sup>

### (1) 유럽적 차원

유럽적 차원과 관련하여 후보도시의 문화프로

그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일정한 문화영역에서 선정대상국가와 그 이외의 EU회원국의 문화종사자, 예술가, 도시들 간의 공동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b) 유럽에서의 문화다양성의 풍부함(Reichtum)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
- c) 유럽문화의 공통된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

### (2) 도시와 시민

도시와 시민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 a) 후보도시에 혹은 그 주변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관심과 외국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 b) 후보도시의 문화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은 보통 1년간 지속한다. 집행위원회(Kommission)는 선정된 도시가 제시한 문화프로그램을 금액으로 환산 평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



10)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3조 참조.

11)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4조 참조.

12) EGV Art. 151 [Entfaltung der Kulturen; gemeinsames kulturelles Erbe], 유럽공동체 설립조약(EGV) 제151조 [문화의 개발, 공동문화유산]

13)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4조 [문화프로그램의 심사기준] 참조.



#### 4. 유럽문화수도 선정절차

유럽문화수도 선정절차는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 (1) 지원서 제출<sup>14)</sup>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유럽문화수도 선정 대상 국가는 늦어도 당해 유럽문화수도행사 시작 6년 전에 국내 도시들에게 지원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다. 지원신청 공고에는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4조 [문화프로그램의 심사기준] 및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문화프로그램 심사기준을 열거해야 한다. 그 지원 신청 공고한 날로부터 후보도시들은 최대 10개월의 지원서 제출 기한을 갖는다. 제출된 신청서에는 유럽문화수도행사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개요를 적어야만 한다.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는 집행위원회(Kommission)에 도시들의 지원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2) 사전선정<sup>15)</sup>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는 늦어도 유럽문화수도행사 시작 5년 전에 사전선정심사회의를 개

최하기 위해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6조에 규정된 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유럽문화수도 후보도시의 지원서를 평가하는 선정심사위원회는 모든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 국가들을 위해서 설치된다. 각각의 심사위원회는 유럽문화수도 선정 대상 국가들에 후보도시의 선정을 추천하는데, 선정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럽의회(Europäisches Parlament)에 의해서 2명, 이사회(Rat)에 의해서 2명, 집행위원회(Kommission)에 의해서 2명, 지역위원회(Ausschuss der Regionen)에 의해서 1명이 지명되고, 나머지 6명의 심사위원은 집행위원회(Kommission)와의 협의를 거쳐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가 지명한다. 최종적으로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가 이들 심사위원을 임명한다.<sup>16)</sup>

선정심사위원회는 유럽문화수도 선정대상국가의 지원서 제출요구에 응한 국내 후보도시들의 지원서를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후보도시들을 선별 압축하여 선정후보리스트를 작성한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는 후보도시들의 지원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선정후보리스트에 올라간 도시들을 추천한다.<sup>17)</sup>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 대상



14)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5조 [지원서의 제출] 참조.

15)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7조 [사전선정] 참조.

16)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6조 [선정심사위원회] 참조.

17)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7조 제2항 참조.

국가와 집행위원회(Kommission)에 보고해야 하며, 각 선정대상국가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한 선정리스트를 정식 인가한다.<sup>18)</sup>

### (3) 최종선정<sup>19)</sup>

최종선정을 위해서 선정대상국가들은 사전선정회의 후 9개월 후에 각각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sup>20)</sup> 선정심사위원회는 최종선정에 오른 후보도시들의 그 동안 더 구체화되어 보충된 문화프로그램을 심사기준과 사전선정회의에서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평가한다.<sup>21)</sup> 선정심사위원회는 최종심사에 올라온 후보도시들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정대상국가의 한 도시에 대해 유럽문화수도의 지명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최종 선정된 도시가 이사회에 의해서 유럽문화수도로 지명되는 경우 추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선정대상국가와 집행위원회에 제출되고, 또한 집행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다.<sup>22)</sup>

### (4) 지명<sup>23)</sup>

각각의 선정대상국가들은 늦어도 당해 유럽문

화수도 행사가 시작되기 4년 전에 한 도시를 유럽문화수도로 지명하고, 이를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지역위원회에 통지한다. 그 통지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명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명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sup>24)</sup> 유럽의회는 선정대상국가의 유럽문화수도 지명이 있는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에 입장표명(Stellungnahme)을 할 수 있다.<sup>25)</sup> 유럽의회의 입장표명(Stellungnahme)과 선정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한 선정이유를 고려하여 작성된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이사회(Rat)가 해당도시를 해당년도의 유럽문화수도로 최종 지명한다.<sup>26)</sup>

## 5. 유럽문화수도 점검 및 감독 단계(감독 및 자문 위원회)<sup>27)</sup>

목표의 실행과 행위심사기준의 실행을 감독하고, 유럽문화수도의 지명시점부터 유럽문화수도 행사시작시점까지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감독 및 자문위원회(Überwachungs- und Beratung-



- 18)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7조 제3항 참조.
- 19)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8조 [최종선정] 참조.
- 20)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8조 제2항 참조.
- 21)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8조 제3항 참조.
- 22)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8조 제4항 참조.
- 23)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9조 [지명] 참조.
- 24)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9조 제1항 참조.
- 25)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9조 제2항 참조.



jury)를 설치한다.<sup>28)</sup> 감독 및 자문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6조 제4항에 따라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지역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 대상국가는 옵서버(Beobachter)를 감독 및 자문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sup>29)</sup>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는 집행위원회(Kommission)에 감독 및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전 3개월까지 진행·발전보고서를 제출한다.<sup>30)</sup> 집행위원회는 감독 및 자문 위원회와 선정도시의 대표를 소집한다. 감독 및 자문 위원회는 유럽문화수도 행사를 위한 준비에 있어 당해 도시의 자문을 위해서 늦어도 유럽문화수도 행사시작 2년 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행사시작 8개월 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당해 도시는 문화프로그램의 구상에 있어서 강한 유럽적 차원의 부가가치 실현을 지원받게 된다.<sup>31)</sup> 각각의 회의 후에 감독 및 자문 위원회는 행사준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와 해당 도시 및 EU회원국에 보고되고, 집행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다.<sup>32)</sup>

## 6. 평가

집행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유럽문화수도 행사의 결과를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에 규정된 목적과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의 독립평가를 받게 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지역위원회에 매년 연말까지 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sup>33)</sup>

## IV. 결론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도시 인프라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도시를 새롭게 단장하고, 1년 동안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그 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유럽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1985년에 시작되었던 “유럽문화도시(Kulturstadt Europas)” 프로그램은 1999년 “유럽문화수도(Kulturhaupt-



- 26)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9조 제3항 참조.
- 27)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감독 및 자문위원회] 참조.
- 28)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제1항 참조.
- 29)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제2항 참조.
- 30)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제3항 참조.
- 31)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제4항 참조.
- 32)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0조 제5항 제6항 참조.
- 33) 유럽공동체 결정 Nr. 1622/2006/EG 제12조 [평가] 참조.



stadt Europas)” 프로그램으로 개명하고, EU법 차원의 법적근거(유럽공동체 결정 Nr. 1419/1999/EG)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 평가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후보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2000년부터 아메리카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아랍지역에서도 이를 모

방해서 1996년부터 아랍문화수도(Arab cultural Capital)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홍 강 훈

(유럽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